「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검토 보고

문순규 의원 발의 조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검토의견임

Ⅰ 의원발의 조례개정 개요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66조(의안의 발의)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 상정시기 :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제 안 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
○ 제안이유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계, 주거안정, 직업훈련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원대상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Ⅱ 담당부서 검토내용

1 법령 개정 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계 법령 검토**

-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

  ⇒ 상위법 및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조례안 제6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수정의견**

: 위원 중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함.

⇒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수정하는 의견**

3 타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 : 12개소

구분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기초지자체	서울	성북구, 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4 소요예산(추계)

○ **재정부담항목**

- 조례안 제4조(지원내용)

○ **소요예산(추계)**

- 비용추계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 비용추계근거 : 타지자체 지원내용 및 금액으로 추산
- 지 원 인 원 : 80여명 추산
- 지 원 내 용 : 1인 최대 2,260만원(동반자녀 미포함)

구 분	생 계 비	주거안정비	직업훈련비 등	비고
지원내용	**1,200만원 이내** - 월 100만원/최대 12개월 (동반자녀 추가지원 / 3인 각10만원)	**700만원 이내**	**360만원 이내** - 월 30만원// 12개월	

- 연도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명)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비 고
소요예산	1,808	0	452	678	678	2022년까지 신청
추계인원	80	0	20	30	30	

5 종합의견 : 조례안 제정 찬성(일부 수정의견)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불법 성매매근절 및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 확보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1부.
2. 조례 수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타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1부. 끝.